

변경 대비표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OCIO연금슬루션성장형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 **변경 사항**: ① 모투자신탁의 부책임용전문인력 삭제(강지혜)
 ②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③ 세법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23. 3. 3.

□ **변경 내용**

구분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톤 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각각 15억원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u>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u>)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톤 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각각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
--	--	---	--

요약정보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7. 29 기준</u>	<u>2022. 12. 30 기준</u>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7. 31 기준</u>	<u>2023. 1. 31 기준</u>
투자자 유의사항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 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	[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



		<p>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증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 신탁계약을 변경을 통하여 해당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증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p>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증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해지되거나, 신탁계약을 변경을 통하여 해당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증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	--	--	--

			다.(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
매입방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7시 이전(경과후) : 제3(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17시 이전(경과후) : <u>3(4)영업일</u>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방법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7시 이전(경과후) : 제5(6)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10)영업일에 지급	17시 이전(경과후) : <u>5(6)영업일</u> 기준가격으로 <u>9(10)영업일</u> 에 지급
과세	세법 개정사항 반영	[세제혜택]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지방소득세 별도	[세제혜택]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12%(<u>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u>)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지방소득세 별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연혁]	모투자신탁의 연혁 업데이트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신 설>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u>2023. 3. 3. : 부책임용전문인력 삭제(강지혜)</u>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7. 31 기준</u>	<u>2023. 1. 31 기준</u>

<p>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 전문인력]</p>	<p>최근 기준으로 기재 모투자신탁의 부책임운용 전문인력 삭제</p>	<p><u>2022. 7. 31 기준</u>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 접형] <u>부책임운용전문인력 : 강제</u> <u>혜</u></p>	<p><u>2023. 1. 31 기준</u> -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 접형] <u><삭 제></u></p>
<p>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p>	<p>최근 기준으로 기재</p>	<p><u>2022. 7. 31 기준</u></p>	<p><u>2023. 1. 31 기준</u></p>
<p>5.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 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p>	<p>모투자신탁의 부책임운용 전문인력 삭제</p>	<p>-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 접형] <u><신 설></u></p>	<p>-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 접형] <u>부책임운용전문인력 : 강제</u> <u>혜</u> <u>(2022.06.03~2023.03.02)</u></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p>	<p>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p>	<p>(1)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2)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파생형] (4)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 접형] 가)(생 략) 나)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의 투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 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p>	<p>(1)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2)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 [주식-파생형] (4)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 접형] 가)(현행과 같음) 나)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의투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u>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u></p>

		① ~ ⑤(생략)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현행과 같음)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4)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가)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생략) 나) (생략)	(1)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자신탁[주식-파생형] (4)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가)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 ⑤(현행과 같음) 나)현행과 같음)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일반위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 (생략)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	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변경 위험 : (현행과 같음)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

		<p>[채권], 「트러스트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 총회 없이 해지되거나,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트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p>	<p>투자신탁[채권], 「트러스트멀티에셋인컴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을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u>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u>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 총회 없이 해지되거나,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트러스트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트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u>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u>)</p>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p>	<p>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생략)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p>	<p>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 (현행과 같음) 설정한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u>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p>

		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3)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7시(오후 5시) 이전 :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17시(오후 5시) 경과 후 :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17시(오후 5시) 이전 :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17시(오후 5시) 경과 후 :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2)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7시(오후 5시) 이전 :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17시(오후 5시) 경과 후 :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17시(오후 5시) 이전 : 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17시(오후 5시) 경과 후 : 6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0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5)환매제한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

		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u>제5영업일</u>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u>제6영업일</u>)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u>5영업일</u>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u>6영업일</u>)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동종유형 총 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2. 7. 29 기준	2022. 12. 30 기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u>* 공제제도</u> <u>: 첨부 참조</u> <u>* 분리과세 한도</u> <u>: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u> <u><신 설></u> <u>단,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u> <u>*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u> <u><추가></u>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u>* 공제제도</u> <u>: 첨부 참조</u> <u>* 분리과세 한도</u> <u>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u> <u>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u> <u>-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u> <u>*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u> <u>: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5) 퇴직연금제도의 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③ 세액공제(2015. 1. 1. 부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u>400만원</u> 이내의 금액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	③ 세액공제(2023. 1. 1. 부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u>600만원</u>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

제		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1 억2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300 만원 이내)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액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12%(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7. 31 기준</u>	<u>2023. 1. 31 기준</u>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 규모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2. 7. 31 기준</u>	<u>2023. 1. 31 기준</u>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하산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현행과 같음)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

	<p>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① ~ ② (생략)</p> <p>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2) ~ (3) (생략)</p> <p>(4)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1)의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p>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u>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u>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2) ~ (3) (현행과 같음)</p> <p>(4)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글로벌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1)의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총회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u>(단, 성과보수를 수취</u></p>
--	---	--

			<u>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u>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생략)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신설) ③ ~ ⑦ (생략)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 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u>법 시행령 제81 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

	<p>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⑩ (생략)</p>	<p>(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⑩ (현행과 같음)</p>
--	--	--

[첨부] * 공제 제도

[변경 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
1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지방소득세 별도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 및 적용제외 대상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22. 12. 31.

- 적용제외 대상 : 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자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

[변경 후]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600만원	15%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900만원)	12%

※지방소득세 별도

<삭제>



〈신 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